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235026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른하늘, 담당변호사 곽환희, 최재훈

피 고 B

피한정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C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부터 2022. 5. 25.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2. 30. D와 사이에 2억 원을 2019. 12. 31.부터 2020. 2. 29.1) 까지로 하여 D에게 빌려주되, 선이자 400만 원(연 12%)을 차감한 1억 9,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D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라 2019. 12. 31. D에게 위 대여금 중 4,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D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그중 1억 원을 E의 국민은행계좌로, 나머지 5,000만 원을 F의 신한은행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D와 피고는 2020. 2. 29.까지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0. 4. 20.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분의 위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4.분부터는 연 9%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20. 4. 30.부터 2020. 12. 31.까지 위 약정이율에 따른 2020. 4.분부터 2020. 12.분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21. 2. 3. 원고에게 2021. 1.분 지연손해금 15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9,15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중 9,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2021. 2.분부터 2021. 4.분까지의 위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용금채무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1. 5.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장기간의 치매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사리 판단을 하기 어려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보증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등 참조),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살피건대, 을 2 내지 6, 12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2. 25.경부터 G병원 신경과에서 기억력 감소 등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 당시 피고는 MMSE2)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이하 ‘MMSE 검사’이라 한다)에서 26점, GDS3) (전반적 퇴화척도검사, 이하 ‘GDS 검사’라 한다)에 2.5점을, 2017. 12. 21. 실시한 MMSE 검사에서는 26점, GDS 검사에서 2.5점, 2018. 9. 27. 실시한 MMSE 검사에서는 29점, GDS 검사에서는 1점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7. 2. 25.경부터 Ginexin-F 약제를, 2017. 8. 16.부터는 Exelon 또는 Aricept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Ginexin-F 약제는 다양한 순환장애증상을 개선하는 순환기계용제로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제이고, Exelon은 다양한 질환에 의한 치매 또는 뇌기능 증상을 개선하는 중추신경용제이며, Aricept는 신경전달물질 조절을 통해 기억 및 인지능력을 개선하는 알츠하이머치료제인 사실, 2020. 11.경 H병원 신경과에서 실시한 피고에 대한 MMSE 검사 결과는 29점, GDS 검사는 3점이었던 사실, 2020. 11. 20.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피고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의 주치의는 ‘피고에 대하여 혈관성 병리를 포함하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에 있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하였고, 전반적인 인지저하와 함께, 특별히 충동선이나 판단력 장애, 감정조절 장애 등을 야기하는 전두엽기능 장애가 다수의 검사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복잡한 현실 상황에서 중요한 사무나 경제적 업무에 대한 판단을 충동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게 될 위험성이 있겠으며,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생긴 문제로 연력이 증가할수록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가족들이나 보호자들의 면밀한 도움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사실,

2022. 12. 14.자 피고에 대한 소견서에 의하면, 위 주치의는 ‘2017년 2월 당시 검사상 인지장애를 이미 보였고, 당시 주치의 판단에 따라 항치매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특히 전두엽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력(정의상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에 대한 장애는 2017년 초부터 이미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력 장애는 그 이후에도 병력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말 당시 환자가 금전 관련 판단에 있어 온전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상의 근거는 그 반대, 즉 2019년 말 당시 환자가 온전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시사하고 있다’의 의견을 밝힌 사실, 피고는 2020. 8. 12.경 수원가정법원에 자신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2020후개92호)를 하여, 2021. 2. 18. C를 한정후견인으로 하는 인용 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위 을 2, 5, 6, 12호증, 갑 6, 7, 10,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 2. 25.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고에 대한 MMSE 검사 결과에 의하면, 위 시기에 인지적 손상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2020. 11. 2.자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진료기록에 인용된 H병원 신경과의 피고에 대한 SNSB(치매 선별검사) 평가 내용에 의하면, 2020. 6.경부터 피고의 인지 및 신체 기능이 외부(보호자)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하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의 GDS 검사 결과(3점)는 경미한 인지장애(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였으며, 전체적인 검사결과 요약에 의하면, 언어능력과 성격변화를 제외한 주의집중능력, 시간/장소에 대한 지남력, 기억력, 전두엽/집행기능은 정상, 시공간능력,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경계선으로 평가된 점, ③ 2022. 12. 14.자 소견서에서 피고에 대한 주치의는 ‘의무기록과 검사결과상의 근거는 2019년 말 당시 피고가 온전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시사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피고가 직접 입원 검사를 받은 2020. 11. 20.경 작성된 위 주치의의 진단서 상에는 ‘피고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고, 복잡한 현실 상황에서 중요한 사무나 경제적 업무에 대한 판단을 충동적으로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하였을 뿐이어서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위 소견서에서 밝힌 위 주치의의 의견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는

점, ④ 한정후견은 ‘질병,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점, ⑤ 2019. 6. 7.경부터 2021. 6. 3.경까지 피고와 원고의 딸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타인과의 의사소통 등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특히 2020. 1. 10.과 2021. 6. 3.경 피고가 원고의 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2020. 9. 4.과 같은 해 9. 30., 2021. 5. 29.경 피고와 원고, 원고의 딸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당시 미변제한 금액 또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피고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위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은 주채무자인 D의 강박 내지 기만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본 2020. 9. 4.과 같은 해 9. 30., 2021. 5. 29.경 피고와 원고, 원고의 딸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에 비추어 을 1, 7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끝으로 피고는, 원고는 주채무자인 D나 실제 차용금을 송금 받은 정성후 등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하여야 하고, 피고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약정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이행된 정성후에 대한 5,0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우선 주채무자 등에 대한 변제 요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데, D의 변제자력이나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 2억 원에 대하여 보증하였고, 이후 원금 9,000만 원과 미변제 차용금에 대하여 2020. 12.분까지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보증채무가 5,000만 원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5.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 1) 차용증에는 2020. 2.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히 오기이다.
- 2)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시간에 대한 지남력(현재 자신이 놓여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5점), 장소에 대한 지남력(5점), 기억등록능력(3점),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5점), 기억회상능력(3점), 언어 및 시공간적 구성능력(9점)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0점으로 평가한다. 점수가 낮을수록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24점에서 30점은 인지적 손상이 없음, 18점에서 23점은 경도의 인지기능장애, 0점에서 17점은 분명한 인지기능장애로 구분한다.
- 3) Global Deterioration Scale의 약칭으로,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증상이 심하다. 총 7단계로 평가되며, 1단계는 인지 장애 없음(임상적으로 정상), 2단계는 매우 경미한 인지 장애(건망증의 시기), 3단계는 경미한 인지 장애(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 4단계는 중등도 인지 장애(후기 혼동의 시기), 5단계는 초기 중증의 인지 장애(초기 치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낼 수 없음), 6단계는 중증의 인지 장애(중기 치매), 7단계는 후기 중증의 인지 장애(말기 치매)로 구분한다.